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4호 2020. 3. 27(금)

선 람	기관의 장

##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559호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560호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 3
- 남원시 조례 제1561호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남원시 조례 제1562호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남원시 조례 제1563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14
- 남원시 조례 제1564호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남원시 조례 제1565호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39
- 남원시 조례 제1566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10호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기준 ----- 45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0-674호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문 ----- 47
- 남원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0-19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1
- 남원시 공고 제2020-684호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입법예고 ----- 7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 1559 호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수집인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 1560 호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 1561 호

###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이라 한다)”을 “남원시민의 장”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의장”을 “남원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 2. 효열봉사장

**제3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익봉사장은”을 “효열봉사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었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정려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또는”으로, “바,”를 “바”로,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2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하며”를 “호선(互選)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남원시”를 각각 “시”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자로 하되”를 “사람으로 하되,”로 한다.

제12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을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으로, “여행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을 “출장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u>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이라 한다)</u>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남원시민의장</u>----- ----- -----.</p>
<p>제2조(시민의장) <u>시민의장</u>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공익봉사장</u></p> <p>3. 4. (생략)</p> <p>5. <u>효열장</u></p>	<p>제2조(시민의장) <u>남원시민의장</u> (이하 "시민의장"이라 한다)----- -----.</p> <p>1. (현행과 같음)</p> <p>2. <u>효열봉사장</u></p> <p>3. 4.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제3조(수여대상) 시민의장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문화체육장은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였거나 시민의 체위향상에 공헌하고 남원시 체육의 명예를 드높인 <u>자</u></p> <p>2. <u>공익봉사장은</u> 공공사업, 사회산업, <u>기타</u>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u>기여하였</u></p>	<p>제3조(수여대상) ----- ----- -----.</p> <p>1. ----- ----- ----- ----- <u>사람</u></p> <p>2. <u>효열봉사장은</u>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었거나,</p>

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정려하여 살기좋은 지역 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

3. 산업근로장은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기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말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근로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자

4. 애향장은 남원시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칭송을 받는 효자, 효녀, 효부,

제4조(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지역유

-- 그 밖에 -- 기여한 사람

3. -----

-----

-----

----- 또는 -----

-----

-- 바 -----

-----

----- 기여한 사람

4.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

-----

----- 사람

<삭 제>

제4조(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

-----.

③-----

----- 호선(互選)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지 등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추천) 시민의장 후보자는 남원시 출신자 및 남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1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의2(추천 제한) 시민의장 후보자 추천자 중 연속 2년 추천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후보자 중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추서) 시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

하지 않도록 하며, -----  
- 사람 -----.

제6조(추천) -----  
시 ----- 시-----  
----- 사람으로서 -----  
-----  
-----  
----- 1명-----  
-----.

제6조의2(추천 제한) -----  
-----  
----- 사람은 -----  
-----  
-----.

제7조(수상자 결정) -----  
-----  
-----  
----- 사람으로 하되, -----  
-----  
-----.

제12조(추서) -----  
----- 사람이 -----  
-----  
-----  
-----.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

거나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공  
무로 여행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출장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  
---.

제14조(시행규칙) -----  
필요한-----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 1562 호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남원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남 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남원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남원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조례 제3조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행정 복지센터”로 한다.

②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제2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④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 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제5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 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제2조 본문 중 “읍·면사무소”를 “행 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원시청	남원시 시청로 60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61
수지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23-10
송동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6
주생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821
금지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금지면 금지순환길 917-27
대강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대강면 성진로 865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6
사매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9-4
덕과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덕과면 덕과월평길 3
보절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17
산동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19
이백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이백면 입촌길 16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80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동충동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86
죽향동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비석길 72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소리길 10
금동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가방뜰길 8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성황단길 7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봉맛1길 10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역재3길 8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u>남원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u>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소재지) <u>남원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u>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p>	<p><u>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u> ----- ----- -----.</p> <p>제2조(소재지) <u>남원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u>-----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 1563 호

###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남원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

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남원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남원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남원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남원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남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은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

야 한다.

② 남원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장 시장의 인정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시장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남원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남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남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남원시장은 제외한다)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남원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5장 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직영매장의 설치)** 남원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하거나 청년이 직영할 수 있도록 남원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직영매장의 운영)** 남원시장은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청년 중에서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농어민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남원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농어민과 청년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3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남원시장은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남원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원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야 한다.



제26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남원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남원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상인회에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회는 20일 이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남원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중

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남원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남원시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제32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남원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남원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시·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남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

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제34조(위탁관리)** ① 남원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주차장 조례」, 「남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남원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남원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지도·감독)** ① 남원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남원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意的 철회에 관한 서류에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상인회 및 전통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인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임시시장 개요	시장명		개설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 기간			
	시장규모	토지 면적:        m <sup>2</sup> , 건물 연면적:        m <sup>2</sup> , 영업장 면적:        m <sup>2</sup> , 점포 수:        개		
	입점상인 수			
	개설 사유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장옥(場屋):        동		
		화장실:        개, 주차장:        m <sup>2</sup>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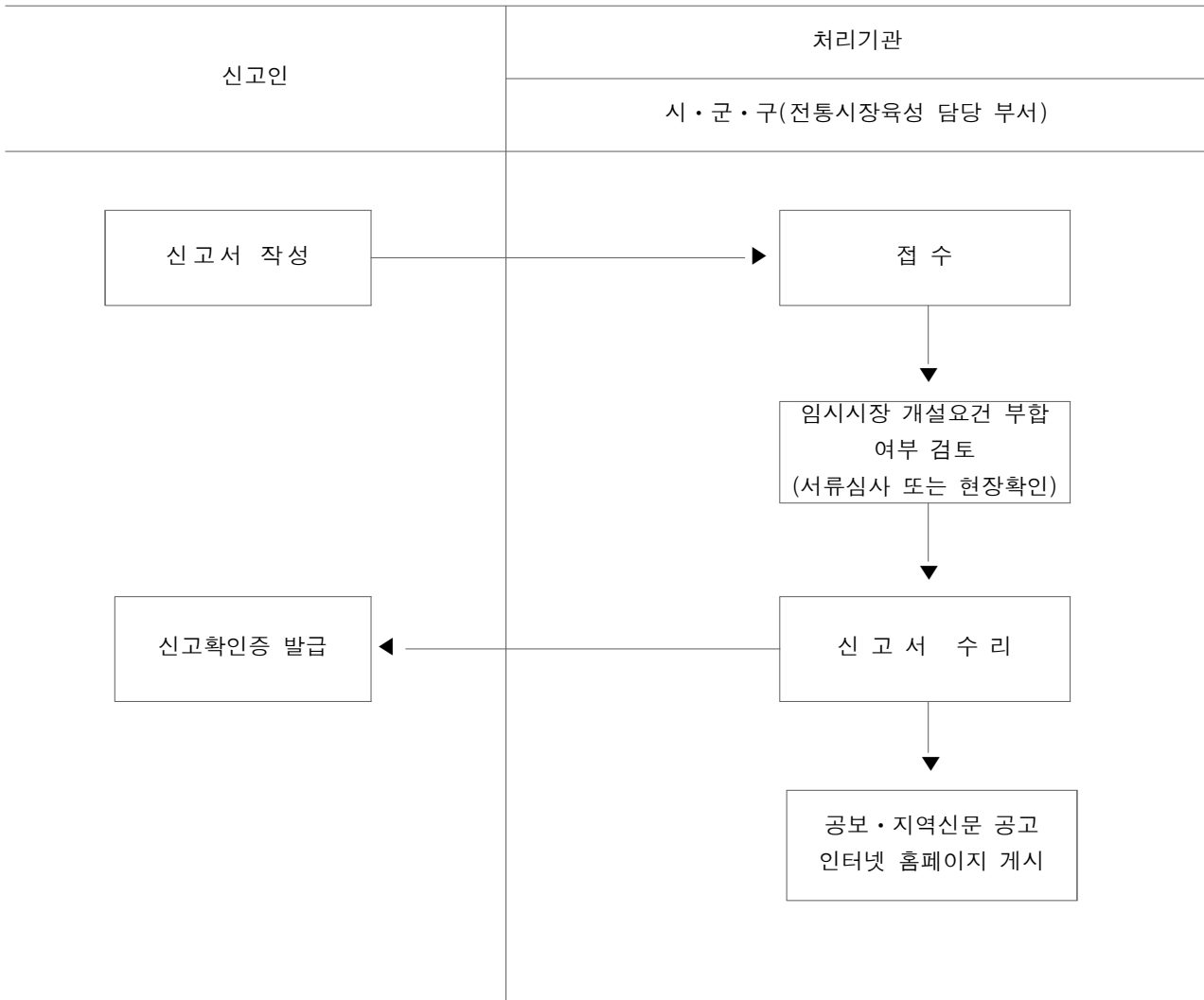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뒤쪽)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 1. 시장 명:
- 2. 개 설 자:
- 3. 소 재 지:
- 4. 시장 면적:
- 5. 개설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임시시장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상인회 등록증

- 1. 상인회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시 장 명:
- 5. 업무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인회를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 개요	시장 명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소유형태
	시장규모	토지 면적:      m <sup>2</sup> , 건물 연면적:      m <sup>2</sup> , 영업장 면적:      m <sup>2</sup> , 점포 수:      개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sup>2</sup> , 기타: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회원 수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법인(조합)·상인조직·단체 명	법인등록번호 등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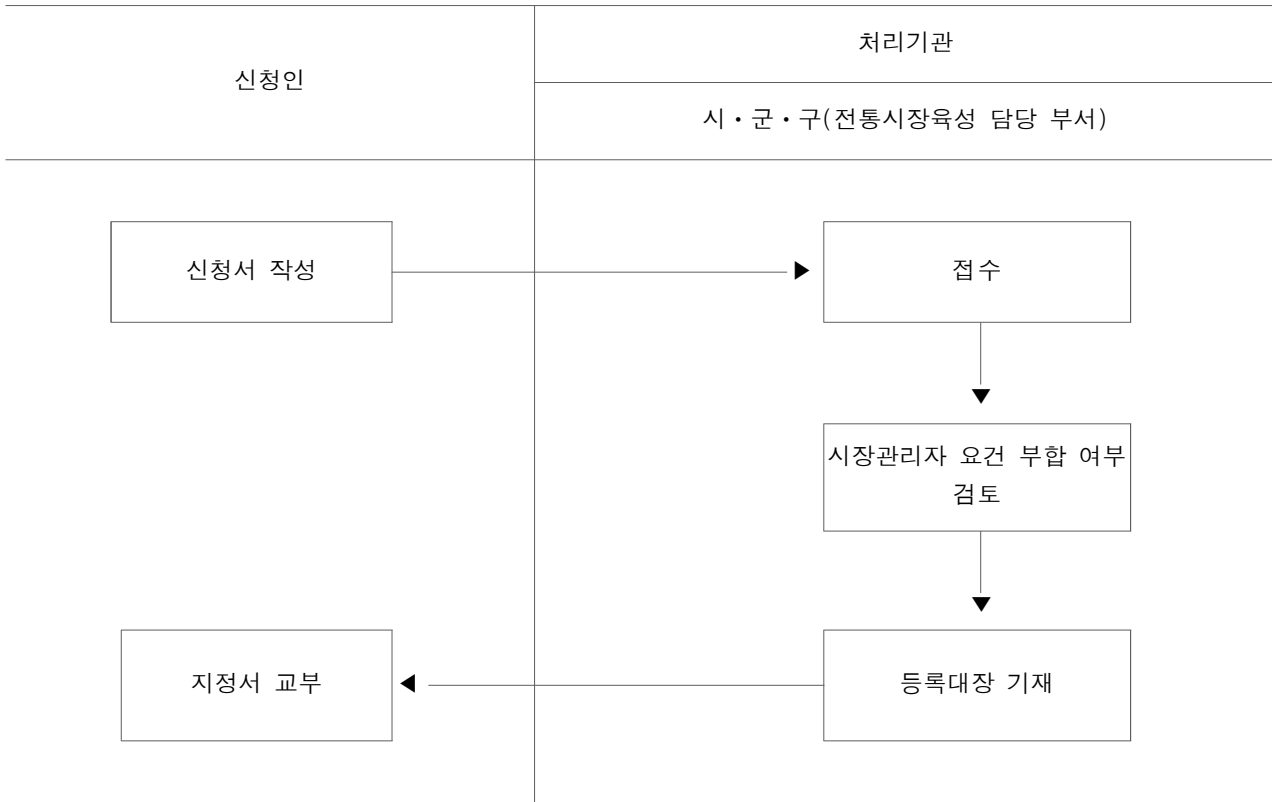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규약 또는 정관 1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1부	수수료 없 음
------	---	------------

(뒤 쪽)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 1564 호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지역 빈집의”을 “빈집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지역의 1년”을 “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 1565 호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관한 사항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
3.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5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가운데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 시
- 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 시

**제7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 1566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조례 제13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21년 1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3조제2항)

구분 업종	사용요율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원)			
		현행	2021년 01월 납기 분부터	2022년 01 월 납기 분부터	2023년 01 월 납기 분부터
가정용	1-10	346	395	464	543
	11-30	432	494	580	678
	31이상	635	725	852	997
일반용	1-50	617	756	950	1,172
	51-100	677	829	1,043	1,286
	101이상	784	960	1,207	1,490
대중탕용	1-500	504	567	655	756
	501-1,000	580	652	754	870
	1,001이상	678	749	849	963
산업용	톤당	398	456	537	629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27일

남원시 훈령 제 410 호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기준**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과 같다.”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강사료 지급기준 및 지급액)</p> <p>① <u>강사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u></p> <p>② (생략)</p> <p>③ <u>수강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할증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할증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u></p>	<p>제3조(강사료 지급기준 및 지급액)</p> <p>①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제5조(시험수당 지급기준 및 기준액) <u>시험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u></p>	<p>&lt;삭제&gt;</p>
<p>제8조(원고료) <u>강의자료로 사용하는 원고료는 별표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u></p>	<p>&lt;삭제&gt;</p>

남원시 공고 제2020 - 674호

##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문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 남 원 시 장

### 1. 제정이유

여성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로 통합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나. 경비지원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안 제5조~안 제14조)
- 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안 제15조~안 제34조)
  - 여성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운영
- 마.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 (안 부칙 제2조)

### 3. 입법예고기간 : 2020. 3. 27. ~ 2020. 4. 16.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육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교육체육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08),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육체육과(☎063-620-56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남원시 조례 제2020-674호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지정·운영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학습센터”란 시에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읍·면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6.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7.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상담에 응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활동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6.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7.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8.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10.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워크숍
  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2장 남원시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남원시 평생교육 소관부서의 국·과장

나. 남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문해교육 분야의 관계자

다. 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시설의 장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② 협의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5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치)** 평생학습관은 남원시 요천로 1283 및 남원시 광한북로 54에 둔다.

**제17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협의회 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7.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8. 평생교육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운영 및 활동가 양성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8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시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 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되, 문해교육이나 공개강좌 프로그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검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 사유에서 해당 사항에 표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수강료 징수 후 수강료 환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을 결정하고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 환불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의 사용 신청)**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변경)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 본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장기간 계속적·정기적 시설 사용을 신청한 경우

2. 시설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및 정치성 집회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7. 사용 허가서를 타인에게 전대하였을 때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5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 주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사용료 반환 및 배상)** ① 시장은 시설 사용료 징수 후 사용료 환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강좌나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50퍼센트 미만으로 모집되어 해당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6. 교육 과정의 회차당 출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29조(강사료 지급기준)** ① 제28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료는 교육의 특성과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책정하되,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의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② 평생학습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강사료 적용을 위한 강의 구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강의(일반교양, 상식, 취미, 여가, 기초과정 등)

2. 숙달된 기능, 해당분야 전공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강의
3. 전문 과정 이수 및 자격취득을 위한 강의
4. 전문분야의 지명도가 높은 강사에 의한 공개 교양강좌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기획, 개발되는 프로그램

**제30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및 학습매니저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문해교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시장은 평생학습 수요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를 육성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공로자 및 기관·단체에게 「남원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검사하거나 관련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관·단체·개인 등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및 사업 선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며, 이미 교부 또는 집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35조(자원봉사 및 홍보활동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홍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및 SNS 활동가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이벤트 응모자 및 당첨자
2. 평생교육 설문조사 참여자
3. 그 밖에 평생교육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순환버스 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 이용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7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별표 1】

##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제21조제3항 관련)

## 1. 수강료 기준

구 분	기 준(1인/1월)	요금(원)	비 고
기술·취미· 어학·문화 등 일반 과정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주당 4시간 미만	6,000	○ 수강 접수 시 교육 프로그램별 시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선납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주당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000	
	주당 8시간 이상	10,000	
일반 과정 (고급·심화반 개설시), 전문과정 및 특화 과정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주당 4시간 미만	12,000	
	주당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6,000	
	주당 8시간 이상	20,000	

## 2. 수강료 면제 기준 (1인 1과목에 한함)

구 분	감면 금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65세 이상의 고령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9. 한부모 가정(차상위 계층)	(1인 1과목) 100% 면제

## 【별표 2】



##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 1.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폐강이 결정되었거나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4. 개강일 이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

## 2.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

구 분	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제한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4. 사용일 이후 사용자의 의사로 시설 사용을 포기한 경우	사용 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 【별표 3】

##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기준

(제25조제3항 관련)

##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대관시설	수용인원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당(회의실)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1.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2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2. 컴퓨터실, 조리실은 10명 이상 관련 수업 시에만 대여 가능  3. 동아리실 대관은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로서 순수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에 한함.  4. 부대시설 이용료는 기본사용료에 포함.  ※ 대관시설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는 시설 대여를 하지 않음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다목적강연장 (301호)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조리실 (203호)	20명	1회 3시간	20,000원	
컴퓨터실 (207호)	20명	1회 3시간	20,000원	
댄스실 (302호)	20명	1회 3시간	20,000원	
강의실	20명	1회 3시간	20,000원	
동아리실 (101호)	15명	주간(오전) (09:00 ~ 12:00)	무료	
		주간(오후) (13:00 ~ 15:30)		
		주간(오후) (15:30 ~ 18:00)		
동아리실 (102호)	15명	주간(오전) (09:00 ~ 12:00)	무료	
		주간(오후) (13:00 ~ 15:30)		
		주간(오후) (15:30 ~ 18:00)		

## 2. 사용료 면제 기준

구 분	감면 금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위원회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

## 【별표 4】

## 교육 강사 자격 기준

(제28조제2항 관련)

강사구분	자 격 기 준
기술교육 강사	○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취미·어학· 문화·체육 등 강사	○ 교육법령에 의한 교원자격 소지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자
	○ 해당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유사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에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별지 제1호서식]

##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

(제20조제1항 관련)

수강과목				신청자명	
수강생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지역	_____ 읍/면/동			성 별	남( ) 여( )
수 강 료	원	결제수단	신용카드 ( ), 무통장입금 ( )		
환불계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면제사유	65세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 ( ), 유공자 ( ), 세 자녀 이상 부모 ( ), 한부모 가정 ( )		증빙서류	신분증, 확인증, 등본 등 해당 증빙서류 첨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동의

동의(필수)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

(제22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관련)

수강취소과목			사용시설물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자택/사무실)	
반 환 계 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반 환 금 액	원			
수강취소사유	1. 취업·이사 2. 건강상의 문제 3. 단순변심 4. 기타			
시설사용취소사유	1. 행사(교육, 활동) 취소 2. 단순변심 3. 기타			
첨 부	증빙서류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기 납부한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제23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기관·단체명)		전 화 번 호	
	주 소			
행사(활동) 명				
사용시설물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변경시	당 초			
	변경사항			
사 용 인 원	명	사 용 료	원	
면제 또는 감면 사유	국가, 지자체, 기타	증빙서류	법령, 공문 등 해당 증빙서류 첨부	
비 고				
<p>위와 같이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남 원 시 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제23조제3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설		
사 용 료	원	

### 사용허가 조건

1.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및 허가권자 지침(지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허가 통지서 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 승인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6. 사용 후 반드시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며, 사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담아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남 원 시 장

## 남원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0-19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 일

남 원 시 장

### 1. 개정 이유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2. 주요 내용

가.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안 제25조제1항제8호)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변경 (안 별표 7)

-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용자 20% 감면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81 /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036-207, 환경사업소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5802), FAX(063-620-685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사업소(☎063-620-5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 3.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사업소  
장

## 1. 개정 이유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2. 주요 내용

- 가.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안 제25조제1항제8호)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변경 (안 별표 7)
  -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용자 20% 감면

##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26. ~ 2020. 4.15. (20일간)
    - 결 과 :
  - 2) 의안 비용 추계서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3) 규제예비심사 : 심사완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등의”로 한다.

8.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8호에 대한 감면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7]

중수도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 빗물이용시설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5조제2항)

업종	구분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가 정 용		20	20	20
일 반 용		"	"	"
대중탕용		"	"	"
산 업 용		"	"	"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u>&lt;신설&gt;</u></p> <p>② <u>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u>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25조(감면 등) ①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u></p> <p>② <u>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등의</u> ----- -----.</p>

## 규제 예비심사 검토의견서

□ 검토대상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검토 방향

○ 규제의 신설·강화 및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포함 여부

□ 검토의견 : **비 심사대상**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이용하는 설치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가 아님

## 남원시 공고 제2020 - 684호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와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안 제16조)

### 3. 입법예고기간 : 2020. 3. 27. ~ 2020. 4 15.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0년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44),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063-620-6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의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관련 정책 활성화 및 현안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성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의 해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
3. 범죄, 위원회 명의를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이 의결된 사람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천재지변
- 2. 학교시험
- 3. 본인 질병과 사고
-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

중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활동실적 확인)** ① 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확인 받으려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실적 신청·접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 신청서

인적 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주 소			
확인 사항	소 속				
	직 위				
	기 간 및 활동시간		. . . ~ . . . (총 시간)		
	활 동 내 용				
용도 (제출처)					

이와 같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실적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b>위탁기관장 확인</b> (신청자격 및 활동실적 확인)	<b>위탁기관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서

인적 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주 소				
경력 사항	소 속				
	직 위				
	기 간 및 활동시간		. . . ~ . . . (총 시간)		
	활 동 내 용				
용도 (제출처)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장 [직인]

붙임 : 세부활동내역 1부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